

유교(儒敎)적 혼인으로부터 탈주 전략 : 중국 광동의 경우



양 승 권 (대구대학교)
(shadowwysg@naver.com)

국문요약

이 논문은 근대 중국 사회, 특히 광동 지역에서 여성들이 유교적 규범과 결혼 문화에 반하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것을 다룬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결혼 관습, 즉 부모의 명령과 중매에 따라 남편과 시부모를 섬기는 역할을 거부할 수 있었다. 대신, '불락부가', '자소녀', '모칭'과 같은 관습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전통적인 제사 공간에서 배제된 자신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사 공간을 창출했다. '불락부가'는 결혼 후에도 여성이 남편 집에 들어가지 않는 문화였으며, '자소녀'는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기혼한 여성처럼 머리를 올려 묶는 것에 의해 결혼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여성들이었다. 이러한 문화는 유교적 가족 윤리관에 기반한 한족의 정통 혼인에 대한 '서브 컬처'로, 유교 예법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그러한 가부장적 억압에서 벗어나 예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치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유교, 불락부가, 자소녀, 모칭, 광동 지역, 결혼, 제사

I. 서론

전통 중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부모의 명령과 중매의 주선에 따라 결혼을 했다. 여성들의 주요 역할은 지아비를 섬기고 자식을 낳아 기르며 시부모를 봉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광둥(廣東) 지역에는 이를 거부하고 유교(儒敎)의 예법(禮法)에 반하는 여성들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다. 결혼 이후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제공하고, 아내는 죽을 때까지 혹은 죽기 직전까지 남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문화가 존재했다. 이것을 ‘불락부가’(不落夫家)라고 한다. 또 기혼한 여성처럼 머리를 올려 묶는 것에 의해 결혼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이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로 머리를 깎아 위로 올렸대자소(自梳)는 의미로 ‘자소녀’(自梳女)라고 불렸다. 주로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스토크드(Janice E. Stockard 1989, 129)는 ‘불락부가’라는 혼인 방식을 ‘compensation marriage’[보상혼(報償婚)]라고 불렀다. ‘불락부가’가 가장 성행한 시기는 1890년경부터 1910년경까지이며, ‘자소’가 가장 성행한 시기는 1910년경부터 1930년경까지였다. 하지만 섭한명(葉漢明 1994, 73)에 의하면, 순덕(順德 현¹⁾)에 있던 어떤 집의 족보에는 명(明)나라 중기에도 남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성의 사례가 상당수 기록되어 있다. ‘불락부가’와 ‘자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명나라 중기 정도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섭한명(葉漢明 1999)은 중국 화남(華南)지방의 ‘자소’와 ‘불락부가’를 유교의 가족 윤리관에 기반한 한족(漢族)의 정통적인 혼인에 대한 ‘서브 컬처’(Sub-Culture)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와 같은 지방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메인 컬처(Main-Culture) 이외에도 일정한 방식으로 능동적이면서도 생존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책략을 발휘한 서브 컬처의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논문에서는 유교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한 여성들의 책략과 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특징을 중국 광둥 지역 여성들의 ‘자소녀’와 ‘불락부가’, ‘모청’(慕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재는 불산(佛山)시 순덕(順德)구이다.

Ⅱ. ‘불락부가’(不落夫家)의 결혼 형태

‘불락부가’란 결혼 후 아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남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여성이 결혼 후에도 친정집에 거주하며 남편과는 별도로 살아가는 형태이다. 좌가(坐家), 또는 장주낭가(長住娘家)라고도 한다. 이 결혼 형태는 가족 구조와 사회 조직에 있어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반영하며, 전통적인 가족 구조나 결혼 관념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를 보여준다. 결혼 후 일정 기간 아내가 친정집에서 생활하고, 임신해서 처음으로 시가(媿家)에 머무는 습속은 한족 이외 다른 많은 소수 민족에게는 흔하게 발견된다(王承權 1993, 42).²⁾ ‘불락부가’는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장가가던 고대 모계제의 단계에서, 여성이 남성의 집에 시집가는 부계제의 단계로 이행하는, 역사적인 사회경제 발전의 과도기를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자가 결혼한 후 즉시 남자 집으로 가서 살지 않고, 여자의 집에 머무는 과도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풍속이 생긴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광둥 지역에서는 유교적 규범을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그러한 습속이 광범위하게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락부가’는 그러한 옛 습속의 규범마저 넘어설 정도로 급진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오봉의(吳鳳儀 1994, 111)는 순덕현의 ‘불락부가’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혼인을 강제당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불락부가’를 하게 된 여성은 자신이 의자매(義姊妹)를 맺은 ‘금란회’(金蘭會)의 여성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금란회는 불교 등의 영향 아래에서 결성된 독립적인 견직물 직조 여성들의 모임이다. 중국 광둥 지역에서 19세기에 등장했다.³⁾ ‘불락부가’ 여성들은 금란회의 조직적인 도움으로 남편으로부터

-
- 2) 20세기 초까지 장족(壯族), 동족(侗族), 묘족(苗族) 등의 소수 민족에게 있었던 풍습이다.
- 3) 금란회의 주요 구성원은 ‘불락부가’와 ‘자소’를 한 여성들이었다. 금란회가 언제 출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 것은 가경(嘉慶; 청대 인종 때의 연호로 1796년부터 1820년까지) 연간이다. 양소임(梁紹王)이 저술한 『반추우암수필(般秋雨齋隨筆)』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책에 의하면 순덕현에 ‘불락부가’한 여성들로 구성된 금란회가 있었고, 남편 집에 들어갈 것을 강요하면 의자매가 집단자살을 하겠다고 하면서 저항했다. 이 기록을 보더라도 금란회가 ‘불락부가’와 깊게 연동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금란회에 가입하려는 여성들은 다음의 네 가지를 서약해야 했다. (1) 독신을 견지한다. (2) 독립하여 생활한다. (3) 상호부조한다. (4) 상호간에 격려해야 한다. 한편, 광둥 지역에는 남성들의 모임인 ‘천지회(天地會)’도 있었다. 천지회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했다. 천지회는 청나라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청나라가 만주족에 의해 세워진 외세 정권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한족에 의한 정권 복구를 목표로 하였다. 이 조직은 비밀리에 운용되었고, 복잡한 의식과 상징, 암호를 사용했다. 천지회는 또한 민중 중심의 사회적·경제적 개혁을 추구했으며, 그들의 활동은 후에 중국에서 발생한 각종 혁명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몸을 지키기 위해 입은 옷의 이음매를 단단히 봉제하기도 하고, 혹은 이 의자매들을 일종의 외숙모와 같은 존재로 삼아 자신을 보호하도록 했다. ‘불락부가’ 하는 여성은 ‘친영’(親迎)⁴⁾ 이후 ‘회문’(回門)⁵⁾까지 남편과의 성교를 거부하고, ‘회문’하게 되면 여성은 그대로 친정에 머물렀다. 만약 남편 집에서 아내가 친정에 돌아가지 못하게 감금하는 경우에는, 금란회 의자매들이 개입해서 ‘회문’을 하도록 남편 집의 사람들과 교섭을 했다. 교섭이 실패하게 되면 의자매들은 그녀를 남편 집에서 탈출시켜 ‘고파옥’(姑婆屋)⁶⁾에 숨겼다. 시가에서 추격해 오면 의자매들은 ‘불락부가’의 원칙을 주장하며, 남편이 첩을 살 돈을 대신 지급한다. 이에 남편 집에서 ‘불락부가’의 원칙을 받아들이면, 그제야 여성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남편이 첩을 받아들인 후 아내는 시가에 하룻밤만 머물면서 첩의 인사를 받고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여성이 이같이 강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광동 지역 특유의 사회적 관행도 한몫했다. 혼기를 앞둔 광동 지역 여성들에게는 혼인에 대한 거부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 여성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남성과의 결혼을 부모가 강요할 때 자신의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혼담이 오고 가는 처녀가 화려한 외출복과 새 신을 신고 냇가로 가서 새 물통에 물을 채워 집으로 가져온 다음, 이것을 부모 앞에 내려놓으면 부모는 이를 거부 의사로 이해해 더는 혼담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可兒弘明 1979, 210-211). 이와 더불어 광동 지역에서는 결혼이 성사된 이후에 여성 집안의 남성 집안에 대한 간섭이 심한 관습도 있었다.⁷⁾ ‘불락부가’는 여자 집안의 남자 집안에 대한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⁸⁾

4) 혼인에 관한 육례(六禮) 가운데 하나로서, 신랑이 몸소 아내가 될 사람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5) 신혼 3일째에 부부가 함께 친정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6) 광동 지역의 양잠 생산지에 있던 여성을 위한 숙소다.

7) 만약 결혼한 여자가 시가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사체를 조사했다. 사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것을 추궁하거나, 친족들이 시가에 몰려가 험담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를 끌고 가서 죽은 며느리 옆에 눕게 하는 관습(병사시(並死屍))도 있었다고 한다(東莞縣志 卷9, 6-7).

8) 이렇게 친가의 시가에 대한 권한이 비교적 강하게 된 데에는 광동 지역이 갖는 지리적·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도 있다. 광동 지역은 지리적으로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지역으로,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높은 농업생산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뽕나무 재배와 누에고치 생산, 직포 등이 발달한 곳으로서 여성들은 이와 관련한 일에 많이 종사했다. 누에치기는 1년에 6~7회 정도나 수확할 만큼 생산력이 좋아 이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저축할 수 있었고, 때로는 남자의 도움이나 부모에 의지할 필요 없을 만큼 자립도 가능했다. 부모가 골라준 남자보다, 노동하면서 알게 된 남자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은 광동 지역이기에 가능했다. 또

두 번째는 부모의 동의 아래에서 ‘불락부가’가 이루어진다. 부모가 미리 아내가 될 딸의 대역을 준비해, 혼례에서는 남편·아내·첩이 등장하고, 혼례가 끝나면 첩만이 남편의 집에 머문다.⁹⁾

한편, 종래의 연구에 의하면, 순덕현을 포함한 주장(珠江) 삼각주(三角洲; delta)에서는 아내가 죽은 장소나 아내의 위패가 있는 곳은 시가의 공간으로 간주하였다(片山剛 2002, 114). 그래서 ‘불락부가’를 한 여성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시가에 보내졌다. 그러나 오봉의(吳鳳儀 1994, 115)에 따르면, 남편이 먼저 죽은 경우, 첩의 자식들 요청으로 ‘불락부가’한 여성이 남편 집에 이사하기도 했다. 비록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죽은 남편의 공식적인 아내로서 남편 집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소임을 맡는 것이다. 이것을 ‘수청’(守淸)이라고 한다.

‘불락부가’는 혼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¹⁰⁾ 다만, ‘수청’한 여성의 경우, 그녀가 거부한 것은 살아서 남편에게 봉사하는 것과 남편과의 성관계, 그리고 자식을 낳는 일이었다.

Ⅲ. ‘모청’(慕淸)이라는 전략

‘모청’이란 죽은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뜻한다. 우선, 청(淸)나라 말기의 학자 유월(俞樾)¹¹⁾의 언급을 살펴보자. 상당히 길지만, 맥락을 잘 살리기 위해 그대로 인용하고자

청대에는 전족(纏足)이란 풍습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광둥 지역에서는 그 양상이 자못 달랐다. 부유한 대가집 규수는 전족을 행했지만, 일반 가정집 여성들에게는 전족이 많지 않았다. 이 또한 생산활동의 주요 부분을 담당했던 광둥 지역 여성들의 특별한 위치를 반영한 것이다(張心泰, 11).

9) 진화신(陳華新 1994)에 의하면, 이것은 ‘대청’(代淸)이라고 불렸으며, 청대에 남해(南海)번우(番禺) 순덕현 등지에서 성행했다. 한편, 금란회가 개입해 대신 돈을 내어 첩을 제공하는 일도 있었다. 금란회원들은 ‘매부강’(買婦講)이라는 금융조직을 만들어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삼았다(可兒弘明 1979, 317).

10) 하지만 간간이 ‘불락부가’한 여성들 가운데는 아이를 낳기 위해 시가로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특히 단오절과 같은 큰 명절 때가 되면 대부분의 ‘불락부가’ 여성들은 양식을 가지고 시가로 들어가 하룻밤을 자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아예 ‘불락부가’를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곤 했다(胡樸安 1988, 32).

11) 유월(1821~1906)은 청나라 말기의 중요한 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그의 학문적 성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고전주의: 유월은 고전 문헌의 연구와 주석을 통해 학문적 명성을 쌓았다. 그는 주희의 주자학에 깊이 영향을 받았으며, 주로 공자와 맹자의 저작들을 연구했다.

한다.

… 광동 지역의 풍속에 ‘모칭’이란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평범한 정서로서나, 예법으로 서나 용납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광동 지역에서는 약혼한 남자가 죽은 후, 누구에게도 시집가지 않는 것을 ‘수칭’이라고 불렀으며, 혼인 관계가 전혀 없이 어떤 죽은 남성과 결혼해 남편 집에서 수절하는 것을 ‘모칭’이라고 불렀다.¹²⁾ 허(許)씨의 딸은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모칭’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딸의 의사를 전했으나, 그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딸은 말한다. “언니가 나쁜 사람을 만나 부모님께서 지금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저까지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께서는 더욱 괴로운 상태에 빠지시겠지요. 게다가 저는 몸이 아주 약해 남편을 위한 식사 준비 등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에 귀의해 출가하자니, 이것은 사람이 다해야 할 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피하고 싶습니다. 이끼가 높은 나무에 달라붙듯이 좋은 곳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사람이 해야 할 도리에도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탄식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딸의 이 말을 듣고 부모는 ‘모칭’을 허락한다. 때마침 진(陳)씨 성을 가진 남자가 죽었는데, 그의 약혼자인 여성이 ‘수칭’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진씨의 어머니는 과부였으며, 게다가 진씨는 외아들이었다. 따라서 진씨의 어머니는 ‘모칭’을 해 줄 여성을 찾고 있었다. 이 두 집안을 중매하는 사람에 의해, 죽은 남성인 진씨와 살아 있는 여성인 허씨 사이에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시집을 간 후 허씨의 딸은 시어머니를 각듯이 모셨으며, 특별히 힘든 노동도 없는 생활을 하면서, 밝고 깨끗한 방에서, 늘 좋은 향을 태우면서 편안하게 지냈다. 진씨 집안에는 죽은 남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섬(葉)씨 집안에 시집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여동생은 허씨와 마음이 잘 맞아 늘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진씨의 여동생은 말했다. “언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맑기 그지없는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허씨는 대답한다. “신념

(2) 실증주의: 그는 실증적인 접근 방식을 중시했다. 이는 고전 텍스트의 해석에 있어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3) 비판적 접근: 유월은 전통적인 해석에 도전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관점을 개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작업은 종종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포함한다. (4) 유교의 재해석: 유월은 유교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모색했다.

- 12) 여기서 말하는 ‘수칭’은 ‘수절’을 뜻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광동 지역에서는 남편이 죽었을 때, ‘불락부가’한 여성이 재가하지 않고 남편 집에 이사해 살아가는 것도 ‘수칭’이라고 불렀다.

이 강하면 된다네.” 여동생은 말했다. “언니는 결혼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진짜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결혼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허씨는 말한다. “아직 자네가 저 문을 빠져나가지 않았으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여동생은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도 ‘모칭’을 하고 싶으니, 허락해달라고 매일 조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자기 딸을 극진히 사랑했으므로 결국 마음을 접고 허락했다. 이어 결혼을 약속한 썩씨에게 딸의 의사를 전했다. 썩씨 집안에서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미 따님께서 시집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무리하게 결혼을 진행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예물을 돌려받는 것으로 양가의 혼약을 파기하는 데 동의했다. 이 두 여성은 늙어서 사망할 때까지 함께 지냈다고 한다. 우리 집안[유월 본인의 집안]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비례(非禮)의 예(禮)’[非禮之禮; 얼핏 보기에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예에 어긋나는 것]¹³⁾이다.”¹⁴⁾

약혼자 없이 죽은 남성과 혼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허씨의 경우와 같이 죽은 남성의 약혼자 대신에 그 죽은 남성의 집에 시집가는 것도 ‘모칭’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국주의 시기 대만총독부에서도 근무한 바 있는 공무원 이데키와타(井出季和太 1935, 23)는, 여성이 죽은 약혼자 집에 시집가서 수절하는 것[수칭]을 바라지 않을 경우, 다른 여성이 그 죽은 남성의 집에 재산이나 지위를 노리고 시집가는 경우도 ‘모칭’이라고 불렀으며, 이런 여성들은 대체로 혼기를 놓치거나 용모가 추해 결혼 상대가 없는 여성들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씨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 결혼 적령기에 다다른 여성 가운데 위험성이 적은 결혼 방식을 원했던 여성이 ‘모칭’을 선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허씨의 사례는 당시의 유교 예법에서는 용납하지 않던 혼인 거부나 시가에서 탈출하는 일 없이, 남편을 향한 봉사라는 유교 예법을 따르면서도 남편과의 성행위 및 출산을 회피할 수 있는 결혼 방식이었다. 유교 예법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그러한 가부장적 억압에서 벗어나 예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치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13) 이 표현의 유래는 『맹자(孟子)』 「이루(離婁) 하편」이다. “맹자가 말했다. 예(禮)인 듯하나 사실은 진정한 예가 아닌 예(非禮之禮)와, 의(義)인 듯하나 사실은 진정한 의가 아닌 의를 대인(大人)은 하지 않는다.”[孟子曰, 非禮之禮, 非義之義, 大人弗爲]

14) 『右台仙館筆記』 卷一.

IV. 결혼 자체에 대한 거부, ‘자소녀’(自梳女)

광둥 지역뿐만 아니라, 일찍이 중국에서 미혼여성들은 머리카락을 3개로 묶어 늘어뜨리고, 결혼하게 되면 이 늘어뜨린 머리를 상투의 형태로 말아 올렸다. 이렇게 말아 올린 상투는 기혼 여성을 상징하는 기호였다. 하지만 ‘자소녀’는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상투로 머리를 말아 올렸다. 『광둥민속대관(廣東民俗大觀)』에 의하면, 자소녀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옛날에 용기(容奇)¹⁵⁾라는 지역에 있는 호(胡)씨 집안에 5명의 딸이 있었다. 첫째 딸은 유복한 집안에 시집을 갔다. 하지만 이는 죽은 남성에게 시집을 간 것이었다. 둘째 딸은 상당한 부를 축적한 상인의 집에 첩으로 들어갔으나, 남편과 본처의 괴롭힘에 시달렸으며, 심지어는 시아버지에게서 성추행마저 당하는 등 비참한 상황에 내몰린 끝에 1년도 지나지 않아 우물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세 번째 딸은 가난한 석공에게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 일하는 도중에 발이 잘리는 사고를 당해 수입이 끊겨 자식들과 함께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네 번째 딸은 가난한 조각인에게 시집을 갔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어 고작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완전히 할머니와 같이 늙어버렸다. 그런데 막내딸은 26세가 되어도 결혼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 네 명의 언니가 겪은 비참함이 자신에게도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그녀는 생각의 생각을 거듭한 끝에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을 먹는다. 그녀가 부모에게 이러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자, 부모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다. 당시 모든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법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여성은 생각에서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는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 마을의 변두리에 작은 집을 지어, 딸이 혼자 살도록 했다. 이때부터 이 막내딸은 스스로 머리를 묶어 올림, 낮에는 뽕나무 잎을 따고 저녁에는 재봉일을 하면서 자활했다. 근면하게 일하면서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원조도 받지 않았다. 이러던 차에 마을에 있는 여러 명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그녀를 모방해 ‘자소’(自梳; 스스로 머리를 묶어 올림)하고서 그녀의 집에 와 함께 거주하며 그녀를 극진히 모셨다. 그녀들은 남의 일을 돕거나 하녀 등의 일을 하며 서로 협력하며 열심히 살았다. 비록 생활은 질박했으나 자유로운 삶이었다. 제사업이 발전하자 제사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 가운데 ‘자소’의 여성들이 많아졌다. 이 여성들은 어렵지

15) 오늘날에는 순덕(順德)구 용계(容桂)다.

않게 경제적으로 자립했다. ‘자소’하는 여성들은 점점 더 늘어나서 봉건적인 혼인제도에 반항하는 ‘자소’의 습속이 형성되었다(余婉韶 1993, 505).

어떤 집에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음에도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이 있으면, 그 집은 불운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태쇠가’(馱衰家)로 불렸다. 정월 대보름 등의 명절에 성인이 된 여성이 시집도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은 재수가 없는 일로 치부되었고, 재산이 줄고 집안의 남성이 죽게 된다고 여겼다(陳通曾 외 1964, 178). 인용한 내용에도 나오듯, 당시에는 “결혼한 여성이나 일생 결혼하지 않는 여성은 생가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예법이 있었다. 하지만 예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딸을 언제까지나 생가에 둘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은 당시에 일반적이었다. 그러면 생가를 떠난 자소녀들은 과연 어디에 간 것일까?

종래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잘 알려진 장소는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바 있는 ‘고파옥’이다. 자소녀가 ‘고파’(姑婆; 아주머니)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 장소가 ‘고파옥’이라고 명명된 것으로 추측된다. 오봉의에 의하면, 한 채의 ‘고파옥’에는 통상 4명~10명 정도가 살았으며, 10명 이상이 살았던 큰 ‘고파옥’도 있었다. 몇 사람의 자소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임차하는 예도 있었지만, 아예 매입하거나 토지를 사서 집을 새롭게 건축하는 예도 있었다(吳鳳儀 1994, 114).

‘고파옥’과 더불어 잘 알려져 있던 또 하나의 장소는 ‘재당’(齋堂)이다. ‘재당’이란 불교나 도교의 시설 가운데 식당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만, 영국의 인류학자 토플리(Topley 1975, 74)는 ‘재당’을 불교나 ‘선천대도’(先天大道)의 재속신도(在俗信徒; 사회생활을 영위 하면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를 위한 숙박 시설로 본다. 이렇듯 광동 지역에서 결혼을 꺼리는 풍조가 퍼져나간 데에는 이 지역에서 유행한 종교도 큰 몫을 담당했다. 우선, 대다수의 광동 여성들은 ‘금화부인’(金花夫人)이란 존재를 크게 숭배했다. 이 존재는 본래 처녀로서 무당이었는데, 죽은 뒤 신격화된 것이다. 또 자소녀들은 재당에서 거주하고 금란회에서 활동하면서 상당수가 백련교(白蓮教) 계통의 민간 종교 결사체인 선천대도(先天大道) 혹은 선천대도의 한 계통인 대성교(大成教)를 믿었다. 대성교의 숭배신인 ‘대성’(大成)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나, 선천대도의 계보가 중국 고대의 반고(盤古)¹⁶⁾에서 시작되는 성인(聖人) 계통과 불교의 부처로부터 달마로 계승되는 계통, 그리고 청대에 이 종파를

16) 중국 신화 가운데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신이다. 그는 한량없이 큰 거인이며 하늘을 떠받들다 죽어서 세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 중국의 창조신이자 세계를 창조해낸 신이라고 하며, 우주의 창조신이라고도 한다.

위해 활동했던 인물 등으로 구성된 것에서 본다면, 이와 관련된 인물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淺井紀 1990, 397). 사제관계가 매우 엄격한 이 종파의 교의는 중국과 티베트의 불교·도교·음양설에서 따온 여러 종파의 혼합주의로서, 기본적으로는 미륵이 도래하는 구원을 믿고 있었다(Marjorie Topley 외 1968, 138-139). 이 교파에서 결혼 거부나 출산의 공포를 가진 여성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천지회 등을 제외한 많은 중국의 종교 비밀결사, 특히 불교적 성격이 짙은 결사들은 대체로 여성들을 많이 받아들였다.¹⁷⁾ 이 불교적 비밀결사들은 여성들의 억압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이념을 따르고 있었으며, 다른 출로를 찾기 어려운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다(喻松靑 1982, 31). 이런 종파들 내에서 여성들은 어떤 직책을 갖는 것 등으로 일정한 방식의 사회적 보상도 획득할 수 있었다. 또 이들은 관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숭배하면, 죽은 후 정토에 가거나 남성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재당에 거주하는 자소녀 대부분은 노년에 접어들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었다. 이 자소녀 신도들은 노년을 걱정 없이 보내고 죽은 뒤에 위패를 봉안받을 수 있었다. 이곳은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토플리는 자신만의 힘으로 집을 확보할 수 없었던 ‘자소녀’가 퇴직 후 현금을 해서 ‘재당’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예를

17) 불교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왜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문점이었다. 불교는 그 어떤 고등 종교보다도 ‘고통’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종교다. 또 불교는 기본적으로 집단적이라기보다는 ‘개체 우선주의적’이다.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 또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도덕률로부터도 거리를 둔다. 불교의 ‘고통’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은 동양전통 사회에서 폄박받는 ‘여성’들에게 매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문명화된 전통사회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부장적이었기에, 고통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지녔고 개인적 차원을 중시했으며 선과 악의 지편을 추구하는 불교는 여성 친화적 측면이 강한 종교다. 붓다는 초창기에는 여성들의 종단 가입에 부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붓다 공동체 남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자인 아난다(Ananda, 阿難陀)로부터 “붓다께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단지 남자 덕분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여자 덕분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지적을 받은 이후 여성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Radha Krishnan 1996, 249). 붓다의 수행공동체가 여성들을 받아들인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이었다. 당시 폄박받던 많은 여성에게 비구니가 되는 것은 해방을 의미했다. 당시 한 비구니는 벽찬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정말 자유롭구나. 나는 진정 해방되었네. 힘든 절구질에서 뻘뻘한 남편과 남편이 시키는 일에서 물뱀 뱀새나는 오래된 물항아리에서 나는 정욕과 분노를 다 끊어냈네. 나는 명상하네. 환희가 몸을 감싸네. 행복하구나!” 불교 공동체는 아시아 전체로 확산해 나가면서 각 지역에서 여성들을 위한 해방의 공간으로 기능하곤 했다.

보면, 나이가 많은 ‘자소녀’만이 재당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었다.

조경(肇慶)시 탑각(塔脚)로에 있는 관음당(觀音堂)은 오랜 세월 동안 자소녀들이 이용했던 시설이었다. 2001년에는 관음당에 모인 자소녀들이 ‘최후의 자소녀’로서 매스컴에서 다루어진 적도 있었다. 이 기사들(王策 2001; 郝敬堂 외 2001)에 의하면, 이 관음당은 청나라 중기에 풍족한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하묘야(何妙乂)라는 사람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 되어있다. 이 재당에는 긴 세월 동안 젊은 자소녀와 나이 든 자소녀가 많이 머물렀다. 머리를 상투로 틀어 올리고, 관세음보살에게 참배하며 불교 수행을 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들어와서 사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2001년 당시 78세였던 양준항(梁俊航)이란 사람은 21세에 이 관음당에 와서 자소녀가 되었으며, 관음당에서 7년간 산 이후인 1953년에 관음당 근처에 있는 집을 새롭게 매입했다. 양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가 관음당에 왔을 때는 100명 정도의 자소녀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자소녀들은 대부분 ‘고파옥’과 ‘재당’ 등에서 머물렀지만, 간혹 생가에서 살아간 자소녀들도 있었다. 카다야마 츠요시(片山剛 2002, 126)가 1999년에 순덕현의 용강진(龍江鎮)에 가서 직접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고파옥이나 재당을 구입할 돈이 없는 자소녀들은 생가에서 살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앞에서 자소녀의 기원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도 나오듯이, 부모가 딸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부유한 집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집을 지어주기도 했다. 진홍증(陳通曾 외 1964, 180-184) 등에 의하면, 순덕현의 용(龍)씨 가문¹⁸⁾은 자기 집의 자소녀들에게 많은 재산과 큰 규모의 집을 제공해서, 자소녀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마다 칸막이가 있었지만, 주방만은 거대한 홀(Hall)처럼 구성해서 10개 이상의 아궁이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 해외에 진출한 자소녀들도 많아서, 특히 대공황 이후 주장 삼각주에서는 홍콩싱가폴 등에 여자종업원으로 타관 벌이에 나선 자소녀들이 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을 강제당해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자소녀가 된 사례도 있었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자소녀가 된 사례도 있었다. 자소녀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부모로부터 집을 제공받는 경우, 선배 자소녀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살아간 경우, 때로는 재당에서 살다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 단독으로 집을 구매해 살아간 사례도 있었다. 자소녀들이 만든 또 다른 집의 형태도 존재했다. 섭한명(葉漢明 1994, 80-95)의 보고에 의하면, 싱가포르에서 일했던 자소녀들은 나이가 들자 고향에 돌아갈

18) 중국에서 손꼽는 명문 집안 가운데 하나다. 중국에서 10대 정원 중 하나인 청휘원(淸暉園)은 이 용씨 가문의 정원이다.

것을 결정하면서, 싱가포르에서 모금한 돈으로 고향에 돌아와 ‘빙옥당’(氷玉堂)이라고 이름 붙인 양로원을 건설했다. 건물은 꽤 큰 규모로 지어졌으며 관세음보살 등의 신상을 구축해 놓았고, 죽은 자소녀들의 위패를 모신 공간도 존재했다. 이 빙옥당은 이후 해외로부터 귀국한 자소녀들이 쉬는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자소녀라면 누구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렇듯 자소녀들은 젊은 시절에 ‘자소’를 선택해 그 이후 몇십 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의 삶을 추구했다.

V. 새로운 전략으로서, ‘자소녀’의 결혼

지금까지는 ‘불락부가’와 ‘모칭’, 그리고 ‘자소’를 별개로 나누어 다루었으나, 이 세 가지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자소녀로 있다가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어 다시 머리를 풀어헤쳐 내려 ‘소기’(梳起)를 하여 ‘불락부가’를 하는 절충적인 방법이 있기도 했다. 또, 겉으로는 ‘자소’를 유지하되 빈곤한 남자를 찾아 몰래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였다(李松庵 1992, 102-103). 카니 히로아키(可兒弘明 1979, 206)는 ‘불락부가’와 ‘자소’를 금란회의 결혼 반대 운동의 두 가지 양상으로 보았다.¹⁹⁾ 특히 광둥 지역에서는 이 금란회의 지원이 없다면, ‘불락부가’와 ‘자소녀’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광둥 지역에서는 남성으로 구성된 결사체로서 ‘천지회’가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여성들만의 결사체인 금란회는 이 천지회와 비교될 만하다.

카니 히로아키에 의하면, 금란회라는 조직은 미혼 여성들의 결사체로 이 결사체 안에서 여성들은 서로 의자매 관계였다. 이는 금란자매(金蘭姊妹)·결계자매(結契姊妹)·고파(孤婆)로도 불렸다. 여기서 ‘고파’라는 용어는 자소녀들이 머물던 집 명칭인 고파옥의 의미와도 연동된다. 고파옥은 ‘불락부가’를 할 때 남편 집에서 탈출한 여성들을 숨기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불락부가’를 행하는 여성과 ‘자소녀’는 분명한 연대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나바 아키코(稻葉明子 1996)는 「목어서(木魚書)」²⁰⁾에 대한 연구에서 금란회의 목적은 여성들끼리의 결맹이었지, 금란회가 결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19) 아이다 유타카(相田洋 1997, 284)도 이 견해에 찬성하고 있다.

20) 주장 텔타에서 유행한 곡조 섞인 이야기 모음집.

주장했다. 금란회와 ‘불락부가’ ‘자소’ 등의 관계는 중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한다. 예컨대,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우태선관필기(右台仙館筆記)』의 내용에 나오는 허씨와 진씨 여동생과의 관계는, ‘모칭’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자, 금란회의 결연 관계라는 성격도 지닌다.

한편, ‘모칭’과 같은 혼인 방식을 스토크드는 ‘신부가 주도하는 영혼 결혼’(bride-initiated spirit marriage)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자소녀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카다야마 츠요시는 ‘모칭’이 혼인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존재인 자소녀에게도 허용되었다는 주장에 비판적 관점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자소녀’와 ‘모칭’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여완소(余婉韶 1993, 507)에 의하면, 자소녀는 ‘고파옥’에 산 적이 없다면 죽었을 때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게 된다. 자소녀는 자신이 태어난 생가나 그 밖에 친척의 집에서 죽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에, 임종 때는 마을 밖으로 나가야만 했으며, 죽어서도 묘에 참배하러 오는 이들은 자소녀 동지들뿐이었다. 그래서 일부의 자소녀는 ‘수묘청’(守墓淸)을 해야 했다. ‘수묘청’에는 ‘묘백청’(墓白淸)과 ‘당시수’(当屍首), 두 가지가 있다. ‘묘백청’은 젊어서 죽은 남자의 집에 자소녀가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시집가는 것을 말한다. ‘당시수’는 어떤 집의 남자가 죽자마자 곧바로 시집을 가서 상복을 입고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양자는 모두 “문(門)을 돈 주고 산다”라는 의미에서 ‘매문구’(買門口)라고 칭한다. 자소녀는 ‘묘백청’으로 결혼한 이후 시가에 꼭 상주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의 아내로서 항상 시가에 일정 금액을 상납해야 했으며, 시부모가 죽었을 때는 시가에 와서 장례를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수’의 경우에는 시부모가 자소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이 있으면, 집에서 내보내어 이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오봉의(吳鳳儀 1994, 113)에 의하면, 죽은 남자와 ‘영혼 결혼’[명혼(冥婚)]을 한 이후, 시가에 전혀 발을 들여놓지 않고,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것을 ‘수망청’(守望淸)이라고 했다. 오봉의는 이 ‘수망청’도 ‘불락부가’의 하나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오봉의에 따르면, 부모가 사전에 딸 대신의 역할을 할 사람을 준비하는 ‘불락부가’와 ‘수망청’은 모두 “문(門)을 돈 주고 산다”라는 ‘매문구’로 불렸는데, 전자는 ‘교심고파’(嬌心姑婆) ‘홍절’(紅節)이라는 용어로 별칭되었으며, 후자는 ‘백절’(白節)이라는 용어로 별칭되었다.

허씨의 ‘모칭’과 ‘묘백청’ ‘수망청’을 비교해보면, 뒤의 두 가지는 ‘모칭’과 ‘불락부가’의 방식을 조합한 것이다. 결국, 자소녀에 의해서든, ‘자소’를 하지 않은 여성에 의해서든, 자신이 죽었을 때 제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혼인 방식은 “문을 돈 주고 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카다야마 츠요시(片山剛 2002)는 주강 삼각주의 제사 문화를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시의 상례와 제례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자의 위패를 집안에 마련되어 있는 제단에 안치했다. 유교의 규범에서는 성인이 된 남자와 그의 처가 이렇게 제사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 존재들이다. 그에 반해 미성년의 남성과 미혼의 여성은 제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카다야마 츠요시에 의하면, 이 미성년의 남성과 미혼의 여성에게 제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구제책이 바로 ‘영혼 결혼’이다.

자소녀의 일부는 틀림없이 제사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문을 돈 주고 사고자” 했을 것이다.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측면이 강하다. 게다가, 어차피 죽은 자와의 결혼이지 실제적인 결혼이 아니므로, 수용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짐작한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소녀는 때로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도 했고, 때로는 자소녀들이 묵는 기존의 여러 시설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그것도 아니면 집을 새로 구매하는 등 나름대로 자기가 살 곳을 확보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소녀는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 제사를 받기 위한 장소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소녀들은 하나의 전략을 구사한다. 특별히 전략을 구사할 필요 없이 손쉽게 자기가 제사 받을 장소를 구할 방법은 비구니들만이 있는 절이나 무녀의 가옥을 이용하거나, 재당이나 고파옥에 자소녀들을 위한 제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가에서 제사를 받는 정통적인 제사 시스템에 올라타면서, “문을 돈 주고 사는” 방법도 있다. 카다야마 츠요시(片山剛 2002)에 의하면, 이 밖에도 자소녀 및 미혼의 여성을 제사 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백성고파사’(百姓姑婆祠)·‘백성공파사’(百姓公婆祠)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빙옥당’도 단지 외국에서 일하던 자소녀들이 고향에서 살 곳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 죽은 다음에 제사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건축된 것이기도 하였다.

Ⅵ. 죽은 남성과 살아 있는 여성 사이의 ‘영혼 결혼’ [명혼 (冥婚)]

유월은 ‘모칭’을 ‘비례(非禮)의 예(禮)’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표현 바로 앞 단락에서 이렇게 말했다.

명(明)나라의 귀유광(歸有光²¹)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이 될 사람이 죽은 경우에도 여성이 수절해야만 하는 비극을 비판했지만, 귀유광의 주장은 정통 예법에 관한 정론은 아니다.

귀유광은 「정녀론(貞女論)」에서 결혼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의 여성을 ‘여’(女)로 표현했으며,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이 지난 여성을 ‘부’(婦)로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결혼식을 올리고 며느리가 된 여성(婦)의 경우 남편이 죽었을 때 수절하는 것은 올바르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의 여성(女)의 경우에도 수절을 강요하는 것은 예(禮)가 아니다. 귀유광에 의하면, ‘여’는 시집가서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남편 집의 묘에 참배하는 것이 가능한 ‘부’가 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 죽은 ‘남편 예정자’를 위해 수절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러나 유월이 지척한 바와 같이 귀유광의 비판은 예법에 관한 정론이 되지 못한다. 약혼자가 죽었을 때 ‘여’는 다른 곳에 시집을 가지 않고 뒤따라 자살하는 일이 적지 않았으며, 혹은 재가를 강요당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 자살하는 일도 끊임없이 발생했다. 약혼자가 죽었을 때 뒤따라 자살하는 것은 사회에서 계속 장려되었다.

약혼자가 죽었을 때, 어떤 여성은 자신의 생가에서 계속 머물기 위해 부모가 새롭게 주선한 결혼을 반대했다. 또, 죽은 약혼자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 머물기 위해, 시부모가 주선한 결혼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양 방향의 거부에는, 명청(明清) 시기 넓게 퍼져 있던 여성의 정절(貞節)에 대한 유년 시절부터의 교육 및 사회적 요구에 영향을 받은, 여성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어떤 길들인 의지도 개입되어 있었다.²²⁾

‘모칭’은 약혼자의 사망을 겪은 여성이 다른 이와 결혼하지 않고 죽은 약혼자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던 풍습을 모방한 것으로, 죽은 남성과 살아 있는 여성 사이의 ‘영혼 결혼’이다. ‘영혼 결혼’에 관한 문헌을 수집해 전문적으로 고찰한 히로타 리즈코(廣田律子 1992, 100)에 의하면, 원(元)나라 때까지는 약혼자가 아닌 사람과의 ‘영혼 결혼’만 발견된다. 그러나 명조와 청조는 정녀(貞女; 동정을 지키는 여성)가 될 것을 장려하고, 여성이 자신의

21) 1506년~1571년. 당송(唐宋)의 시문을 규범으로 삼는 당송파의 저명한 문인이었던 명나라 때의 학자다.

22) 다른 한편, 광동 지역의 여성들은 성적으로 상당히 개방적이기도 했다. 광동 지역에는 음사(淫祠) 채청(采靑)·새희(賽會) 등의 풍속이 있었다. 음사란 사망한 연인을 그리워하는 상열지사이거나 새희를 하는 사당을 지칭하였다. 새희는 종교극으로서 이때 사람들은 음주와 가무를 하며 다소 난잡하게 놀았다고 전해진다. 채청은 아녀자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더라도 눈을 감아주는 것으로서, 특히 정월 대보름에 심했다고 한다(屈大均 1985, 209).

죽은 약혼자와 ‘영혼 결혼’을 하는 것을 정통적인 혼인으로써 인정했다. 유교 이데올로기의 ‘정녀 되기’를 장려하는 문화의 확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영혼 결혼’ 풍습이 없었다면, 더구나 이것이 하나의 정통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면, ‘모칭’은 고안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모칭’은 유교 예법의 압박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풍습(전래의 ‘영혼 결혼’)을 이용해 살짝 비틀어, 여성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삼는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전술한 허씨의 사례만을 본다면, ‘모칭’은 ‘불락부가’와는 다르게, ‘모칭’하는 여성과 남편이 될 집안의 어떤 공모가 있을 가능성도 컸다. 그래서 ‘모칭’하는 며느리를 받아들인 시가의 여러 사정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서 나온 유월의 『우태선관필기』 인용문을 보면 진씨 집안의 죽은 아들에게는 형제가 없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후사를 이을 것인지의 문제는 집안의 대사가 될 수밖에 없다. 청조의 예법에서는, 아들이 죽었을 때 후사를 새롭게 세우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죽은 아들의 후사로 인정을 했다(滋賀秀三 1967, 383).

- (1) 죽은 아들의 아내가 재혼하지 않는 경우.
- (2) 죽은 아들의 약혼자가 결혼하지 않는 경우.
- (3) 며느리는 재혼했지만, 죽은 아들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
- (4) 죽은 아들은 미혼이었지만, 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경우.

진씨 집안의 경우에는 죽은 아들의 약혼자가 ‘수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죽은 아들의 후사를 세울 수 없었다. 따라서 친척이든 누구든 죽은 아들과 같은 세대의 제삼자를 세워 후사를 이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진씨 집안의 어머니는 남편에서 자신의 자식으로 이어지는 정통적인 방식의 계승을 부정당하게 된다. 또 그녀의 지위 자체가 위협해질 수도 있다.²³⁾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죽은 아들 대신 관리했던 유산을 새로운 후계자나 그 관계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영혼 결혼’을 거행하는 것으로 인해 제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제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진씨 집안의 경우, 만약 아들이 성인이었다면, 새롭게 제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 따위는 필요 없게 된다. 하지만

23) 이 경우 진씨 집안의 어머니는 아들이 처음부터 없던 것과 매일반이었다. 왜냐하면, 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따라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다. 유교 이데올로기로 움직이던 전통사회에서 이런 상황에 빠진 과부는 여러 면에서 위협했다.

죽은 이들의 후계자를 세워서 보다 확실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며느리의 존재가 꼭 필요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재산이 많은 과부가 외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죽은 이들의 며느리를 받아들인 하나의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의 결혼 관계가 아닌 죽은 남성과 살아 있는 여성 사이의 ‘영혼 결혼’이란, 모창모청(冒淸)수모창묘백창당시수매문구수망청 등의 여러 가지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저마다 갖가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허씨의 사례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이 논문은 전통적 유교 가치관에서 벗어난 독특한 여성 문화와 그들이 이루어낸 공동체의 특성을 중국 광둥 지역의 ‘자소녀’, ‘불락부가’, 그리고 ‘모청’ 등을 통해 탐색했다. 주강 삼각주 지역의 제사 공간에 대해 고찰한 카다야마 츠요시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고파옥’·‘백성고파사’·‘백성공파사’·‘의사사’(義祀祠) 등의 다양한 제사 공간이 존재했다. 그리고 카다야마는 광둥 지역에서 집 안에 있는 제단이나 사당의 제사에서는 유교를 기반으로 한 명조와 청조의 이념이 엄격하게 준수되었다고 말했다. 바로 이 때문에, 제단과 사당에서의 제사와 같은 정통적인 방식의 제사 공간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사 공간이 창출되었다고, 그는 분석하고 있다. 과부가 재가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것은 명청 시기의 기본적 예법이였다. 따라서 주강 삼각주 지역에서도 혼인에 관한 명조와 청조의 이념이 강하게 주입되어, 일단 결혼한 여성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의 집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주강 삼각주 지역의 많은 여성에게 정통 유교 예법에 따른 결혼 문화를 거부하는 풍조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강 삼각주 지역 여성들에게는 모창·불락부가, 그리고 ‘자소’가 유행했다. 그것은 여성들의 재가를 잘 허용하지 않는 규범을 역이용하여, ‘아내’ 혹은 ‘아내와 다른없는 자’로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하나의 전략이었다. 또한, ‘불락부가’나 죽은 남자와의 ‘영혼 결혼’은 정통적인 제사 공간에서 제사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자소녀의 일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만 '영혼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그 이외 '남편 집의 문'에 들어가지 않았던 자소녀들은 다양한 제사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내었다. 자소녀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거주 공간을 개척함과 아울러, 죽은 다음을 대비한 다양한 제사 공간을 창출했다.

이 논문에서 다루어진 독특한 결혼 관행과 여성 문화는 현대적 맥락에서 여러 함의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우선, '자소녀', '불락부가', '모칭' 등의 현상은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의 충돌과 조화를 탐색하는 일련의 연구들에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된다.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는 이러한 문화는 서구로부터의 영향이 아닌 '자발적 근대'라는 맥락에서 개체적 권리의 발현을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광동 지역의 '불락부가'와 '자소녀' 등의 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이색적인 현상을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개인의 자유·문화적 다양성, 나아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중요한 논의에 기초적 사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孟子
- 東莞縣志, 卷9
- 張心泰. 粵遊小志. 第九帙

참고자료

- 可兒弘明. 1979. 近代中國の苦力と‘豬花’. 岩波書店, 206-317.
- 廣田律子. 1992. 文獻に見出せる冥婚習俗とその意味. 人文研究 114. 神奈川大學人文學會, 100.
- 屈大均. 1985. 廣東新語, 中華書局, 209.
- 稻葉明子. 1996. 木魚書〈沈香太子〉について - 女同士の結拜‘金蘭’をめぐる, 中國古典小説研究 第二号.
- Radha krishnan. 이거용 역. 1996. 인도철학사 2. 한길사, 249.
- 相田洋. 1997. 結婚を拒否した女たち - 金蘭會寶卷木魚書, 異人と市 - 境界の中國古代史, 研文出版, 284.
- 葉漢明. 1994. 權力的次文化資源 - 自梳女與姊妹群體. 華南婚姻制度與婦女地位. 廣西民族出版社. 1994, 73-95.
- 葉漢明. 1999. 妥協與要求 - 華南特殊昏俗形成假設. 禮教與情慾 - 前近代中國文化中的後/現代性.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余婉韶. 1993. 自梳女的起源人. 廣東民俗大觀 下卷. 廣東旅游出版社, 505-507.
- 吳鳳儀. 1994. 自梳女與不落夫家 - 以廣東順德爲例, 華南婚姻制度與婦女地位, 廣西民族出版社, 111-115.
- 王承權. 1993. 中國各民族不落夫家婚俗的比較研究. 民族研究 第六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2.
- 王策. 2001. 嶺南最後自梳女. 今晚報.
- 喻松青. 1982. 明清時期民間宗派中的女性. 南開學報 第5期, 31.
- 李松庵. 1992. 自梳女與不落家. 近現代新筆記叢書. 商務印書館, 102-103.
- 滋賀秀三. 1967. 中國家族法の原理. 創文社, 384.
- 井出季和太. 1935. 支那の奇習と異聞. 平野書房, 23.

- 陳遜曾·黎思復·鄔慶時. 1964. 自梳女與不落家. 廣東文史資料 12輯.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廣東省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178-184.
- 陳華新. 1994. 守清與代清. 嶺南文史 第一期. 廣東省文史研究館.
- 淺井紀. 1990. 明清時代民間宗教結社の研究. 研文出版, 397.
- 片山剛. 2002. 死者祭祀空間の地域的構造- 華南珠江デルタの過去と現在, 死の文化誌 - 心性·習俗·社會, 114-126.
- 郝敬堂·王華平·劉光輝. 2001. 尋找最後的自梳女. 中國新聞網.
- 胡樸安. 1988. 中華風俗志. 上海出版社, 32.

- Janice E. Stockard. 1989. Daughters of the Canton Delta, Hong Kong University, 129
- Marjorie Topley. 1975. Marriage Resistance in Rural Kwangtung, Margery Wolf and Roxane Witke, eds. Women in Chinese Society, Stanford U. P, 74.
- Marjorie Topley and James Hayes. 1968. Notes on Some Vegetarian Halls in Hong Kong Belonging to the sect of Hsien-t'ien Tao, Journal of the Hong Kong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8, 138-139.

● 투고일: 2024.1.20. ● 심사일: 2024.02.05. ● 게재확정일: 2024.02.05.

| Abstract |

Escape Strategy from Confucian Marriage Culture in the Guangdong Region of China

Yang Seunggueon (Daegu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formation of a unique culture in modern Chinese society, particularly in the Guangdong region and the Pearl River Delta, where women defied Confucian norms and marriage customs. Women in these areas were able to reject traditional marital practices, which typically involved obeying their parents' arrangements and serving their husbands and in-laws. Instead, they adopted customs like 'Bulakbuga', 'Jasonryeo', and 'Mochung' to secure social status and create various forms of ancestral rites spaces as a remedy for being excluded from traditional ancestral rites areas. 'Bulakbuga' was a culture where women did not enter their husband's home even after marriage, and 'Jasonryeo' referred to women who expressed their refusal to marry by wearing their hair up like married women, despite being unmarried. These cultural practices represented a subculture within the Han Chinese traditional marriage system based on Confucian family ethics, strategically using the norms that typically restricted women's remarriage to secure social status and establish ancestral rites spaces for after death.

<Key words> Confucianism, Bulakbuga, Jasonryeo, Mochung, Guangdong region, marriage, ancestral rites